

1. 개정이유

법령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,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('21.3월)을 이행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(안 별표 2)

-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횟수로 위반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처분 받은 날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

나. 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명확화(안 별표 2)

-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, 적발된 날부터 그 이전의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 미반영 하도록 규정 명확화
- *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,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'22.00.00.~00.0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목(종전의 다목) 2) 중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[별표 2] 어장정화·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(제12조제1항 관련) 1. 일반기준 가.·나. (생략) <u><신설></u>	[별표 2] 어장정화·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(제12조제1항 관련) 1. 일반기준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<u>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</u>
<u>다.</u>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 1)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)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	<u>라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) ----- ----- 2) ----- --- 인정하는 ---